

## 〈공지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관련 1차 질의응답 답변

1월 20일(월)까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답변입니다.

- 1) 법 제33조 제2항, 동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의회 또는 광역의회 모두 가능합니다.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의견 청취한 내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 및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3월14일 공모마감 이후 인 4월4일 18시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 □ 서류 제출에 관한 답변입니다.

- 1) 광역도 관할 시·군의 경우, 광역도를 경유하여 문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관할 시·군의 선도지역 요청사항에 대해 파악하도록 한 것입니다.

### □ 평가항목에 관한 답변입니다.

- 1) 공모지침의 평가항목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동일한 내용이며, 다만 평가항목별 “주요평가 세부내용”은 평가위원들이 평가 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 □ 사업구상서(안) 작성에 관한 답변입니다.

- 1) 사업구상서(안) 작성양식은 공모지침에서 안내한 내용(휴면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외에 페이지여백, 사진 및 도면크기, 글자색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 2) 증빙자료의 경우 30페이지에 산입되지 않으며, 별도 관련 자료는 제출할 수는 있으나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3) 연계사업방안 작성 시 기존에 계획·확정된 사업과 앞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관한 답변입니다.

- 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통계청자료와 세움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읍·면·행정동 단위로 구축한 정보체계로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그 밖에 별도로 집계구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을 검토할 경우,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2차 질의는 1월 29일(수)까지 받습니다.

개별적인 전화질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이 어려우며, 답변한 내용도 공신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e-mail([urauri@auri.re.kr](mailto:urauri@auri.re.kr))과 전화(임강륜, 031-478-968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21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